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6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 제2차 및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고시되고, 박근혜대통령의 공략에도 포함된 남부내륙철도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하여, 본 노선이 통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조하고 공동으로 노력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명칭(안 제2조)

1) 남부내륙철도추진 道·市·郡 행정협의회

나. 협의회의 구성(안 제3조)

1) 경상북도, 김천시, 성주군, 고령군
경상남도, 합천군, 의령군, 진주시,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다. 주요 처리사무(안 제5조)

1) 본 사업이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협의
2) 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회나 중앙부처 방문·건의나 대외적인 홍보 등 사업전반에 필요한 사항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결정 사항

라. 협의회의 조직 및 회장(안 제6조, 제7조)

1)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분과(총무, 대외협력, 홍보) 10명으로 구성
2) 협의회 회장은 노선통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순서대로 역임
3)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총회의결을 거쳐 1년연장 가능

3. 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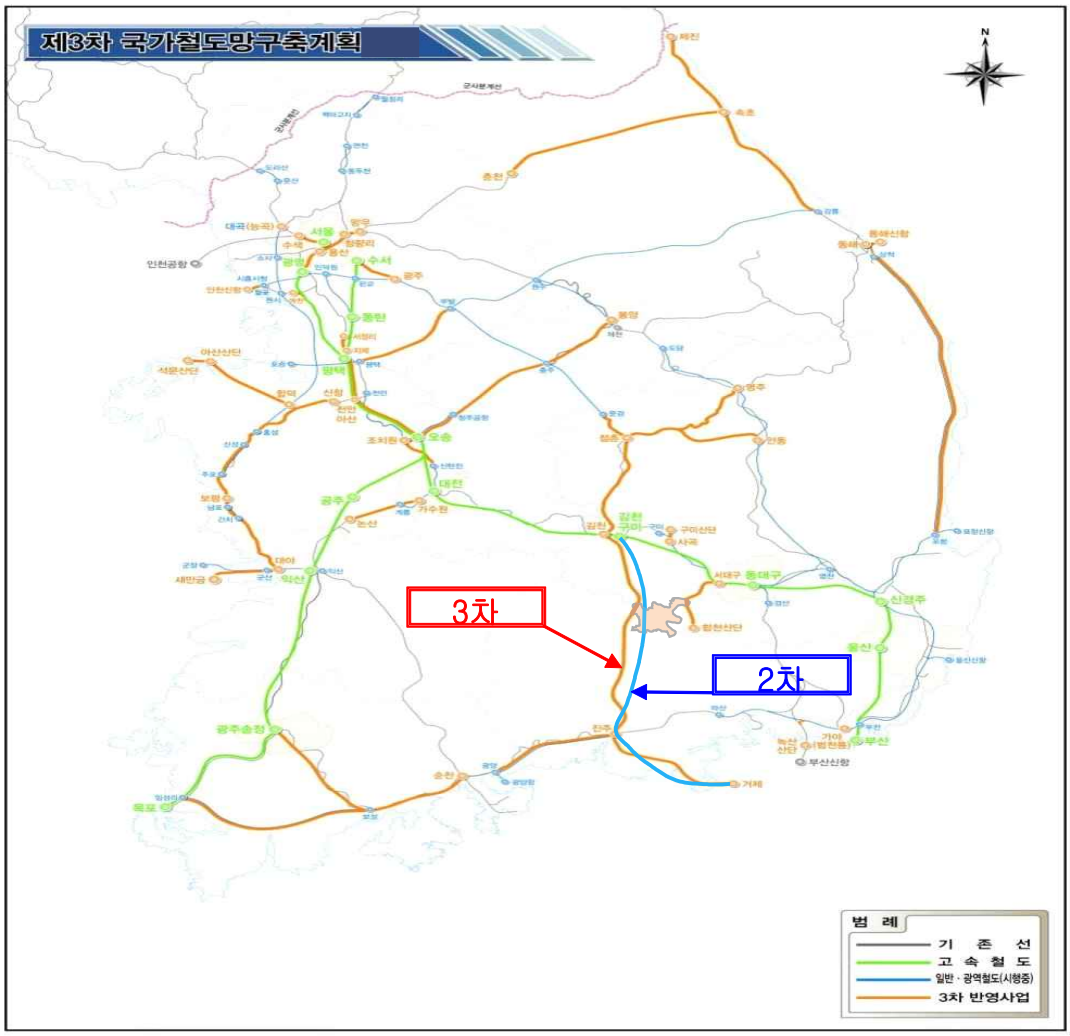
나. 추진현황

○ 2016. 3. 11 : 행정협의회 구성 합의(기획재정부 2차관 면담 시)

○ 2016. 3. 30 :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해당 시군 담당과장)

다.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도 : 붙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도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안

제1조 (목적)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2011년 4월 4일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고시되고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된 “남부내륙철도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노선이 통과하는 道·市·郡이 긴밀히 협조하고 공동 노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약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협의회는 명칭은 『남부내륙철도추진 道·市·郡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라 칭한다.

제3조 (협의회 구성)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북도, 김천시, 성주군, 고령군, 경상남도, 합천군, 의령군, 진주시,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로 한다.

제4조 (사무소 위치) 본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제5조 (처리사무)

① 본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협의

②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회나 중앙부처 방문·건의나 대외적인 홍보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타 본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결정사항

제6조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1인과 분과(총무, 대외협력, 홍보) 10명으로 구성하며 분과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총무분과는 본 협의회 운영에 관한사항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2. 대외협력분과는 국회 및 중앙부처 건의나 관련기관 방문 등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3. 홍보분과는 언론사 보도지원 및 대·내외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회장) ① 회장은 노선통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가 순서대로 역임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 1회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차 순위 자치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간사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남부내륙철도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운영 및 기록관리 등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년2회)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며,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원(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회원을 대리하는 자(부단체장)가 참석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는 (북쪽/남쪽)으로부터 통과 노선 시·군 순에 의거 개최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남부내륙철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운영비) 협의회 운영에 따른 경비는 “남부내륙철도추진 행정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 공동부담금 집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보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